

分配上的 不平等 : 原因과 構成*

李 俊 求**

<目 次>	
I.	머 리 말
II.	不平等의 諸原因 : 概念的 接近
III.	不平等發生原因의 分析
IV.	맺 음 말

I. 머 리 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肉體的·精神的 特性과 社會·經濟的 背景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배경이 그가 성장했을 때의 經濟的 地位와 유기적 關係를 가지고 있는 한,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의 不平等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배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키를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知能을 똑같이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知的 刺戟의 量과 質을 균일하게 만들 수도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는 그 사람이 받게 되는 教育이라든가, 혹은 그 후의 職業이나 所得水準에 있어서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며, 이렇게 본다면 우리 社會에서의 경제적 지위의 不平等 중 어떤 부분은 人間社會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 전체가 이와 같이 스스로는 통제불가능한 運命的인 요소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의도적인 選擇이나 의식적인 努力을 통해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거의 똑같은 遺傳子와 環境을 가졌다고 생각될 수 있는 一卵性 쌍둥이의 경제적 지위가 반드시 같지 않다는 것만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때로는 運이 작용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운이 좋아 사업에 성공하는가

* 이 研究는 서울大學校 大學發展基金 大宇學術研究費의 支援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1) 어떤 사람의 經濟的 地位는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이 所得, 財產, 職業의 種類 등일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수준이라는 것이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지 唯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득수준과 경제적 지위를 거의 동격에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 가난에 빠지는 수도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은 이와 같이 個人的인 요소에 의해서 생길 뿐 아니라 社會的인 요인에 의해서도 생기게 된다. 社會적인 力學關係 혹은 政府의 시책이 경우에 따라서 불평등을 增幅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나아가 불평등의 현상은 그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經濟體制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한 사회에서 보게 되는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은 이와 같이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平等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더 낫다는 명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과연 成功的일 것인가,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기울이는 것이 效果的일까 혹은 그러한 노력이 어떤 심각한 副作用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점 등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러한 견해차가 再分配政策의 기본방향을 둘러싼 날카로운 의견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와 같은 견해의 차이는 주로 知識의 不足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지위의 不平等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 나며, 각각의 원인이 어떤 關係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갖추어지고, 모든 사람이 이를 공유할 수 있다면 견해의 차이는 그 폭이 훨씬 좁아질 수 있을 것이다. 비단 韓國뿐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든 再分配政策을 둘러싼 의견의 대립은 매우 첨예한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현실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학문적 규명이 아직 철저하지 못한 데 그 큰 이유가 있다.

이 論文의 주요한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학문적 현실의 극복을 위해 한 사회의 不平等을 만들어 내는 原因이 무엇이며 이들의 相對的 構成은 어떤 것인가를 찾아 보는 데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 그 자체가 그렇듯이,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불평등의 현상은 갖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엉켜 생겨난 것이므로 하나의 체계로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불평등의 요인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증적 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점에서 아직 충분한 뒷받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물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 이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완전한 해답을 얻기 위한 힌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 될 것이다. 우선은 문제에 접근하는 개념적인 틀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이 論文은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다음의 Ⅱ節에서는 不平等的 여러 要因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게 된다. 이 여러 요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들의 體系的 分析은 Ⅲ節에서 행해질 것이다. 이 절에서는 우선 經濟的 地位가 世襲되는 정도에 대한 분석을 행한 후, 平等化를 가져오는 手段으로서의 教育에 대해 고찰하고, 마지막으로는 除去可能한 불평등 요인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마지막 節에서는 논의의 要約과 더불어 政策的 合意가 제시될 것이다.

II. 不平等的 諸原因：概念的 接近

불평등을 일으키는 모든 社會的 要因을 捨象하고 個人的 要因에만 관심을 집중시킨다고 할 때, 불평등은 최초로 어디에서 싹튼다고 해야 좋을까? 이 불평등의 싹은 어떻게 성장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세계의 불평등한 결과를 유발하게 되는가? 어떤 개인을 둘러싼 社會的 背景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의 형성과정에 어떤 背景的 制約을 가하게 되는가? 이 節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차례로 답함으로써 어떤 한 사회에서 經濟的 地位의 不平等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개념적 틀을 세우고자 한다.

1. 個人的 要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不平等的의 최초의 싹은 家庭에서 돋아난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 때 그는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遺傳的 過程에 의해 갖가지의 특성을 물려받게 된다. 이렇게 유전된 특성은 그가 후에 영위할 경제적 생활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나중에 다시 논의되겠지만, 어떤 학자는 유전적 요인이 개인의 經濟的 地位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어놓고 있다. 유전적 요인이 그와 같이 결정적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무시 못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家庭은 또한 그에게 어떤 背景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의 경제적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가정이 제공하는 배경은 教育的 環境과 經濟的 環境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教育的 環境은 그가 가지고 태어난 遺傳的 素質을 강화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아이들에게 많은 知的 刺戟을 줄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갖추어진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유전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적 자국이 전혀 없는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보다 더 높은 知能을 가지게 된다. 지능뿐 아니라 成就動機, 推進力 혹은 勤勉性 같은 특질도 가정의 교육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뒤에 보게 되겠지만 經濟的 環境에 있어서의 격차는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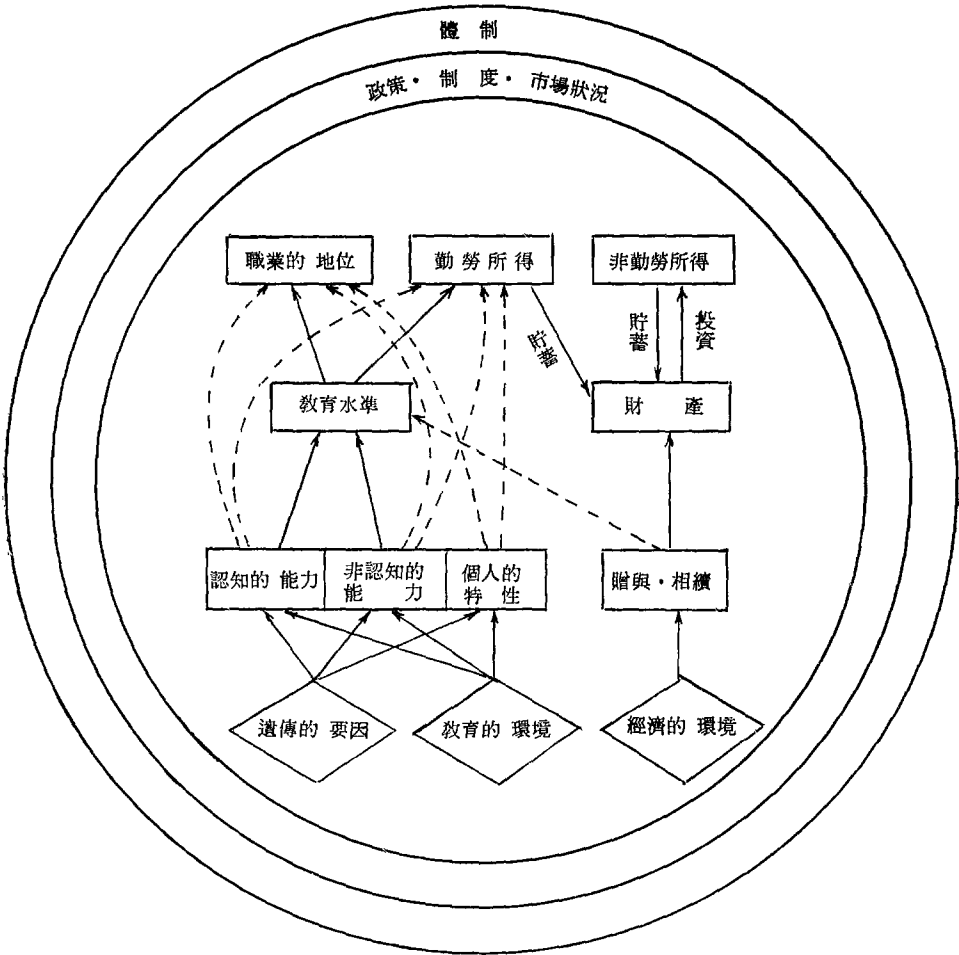
이상에서 설명된 不平等의 최초의 싹들, 즉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遺傳的 要因, 教育的 環境 및 經濟的 環境은 불평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圖式化하여 보여 주고 있는 <그림 1>에서 세 개의 마름모꼴로 표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마름모꼴이 세 개의 同心圓 중 가장 작은 것의 아랫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심원 중 제일 작은 것은 불평등의 요인에서 個人的인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圓 안의 맨 아랫 부분은 최초의 불평등의 싹이 돌아나고 있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세 가지의 불평등의 싹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사회에서 보는 불평등의 양상으로 변형되는가? 이제는 설명이 복잡해질 것이므로 그림을 보며 차례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세 마름모꼴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네 개의 직사각형 중 왼쪽에 위치해 있는 세 개의 직사각형은 어떤 사람의 學歷이나 勤勞所得 혹은 職業的 地位(occupational status)에 영향을 주게 될 개인의 能力 및 特性을 대표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은 認知的 能力(cognitive skills)과 非認知的 能力(non-cognitive skills)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지적 능력은 單語와 數字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기능, 주어진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기능 및 論理的 推論을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Jencks *et al.* (1972, p.53)]. 우리가 보통 「知能」이라 할 때 이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IQ檢査에 의해 그것의 높고 낮음을 측정하는 것이 상례이다.⁽²⁾

인지적 능력은 遺傳的 要因과 教育的 環境에 의해 주로 형성된다. 다음 節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인지적 능력의 형성에 둘 중 어느 것이 더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한 실정이다. 이 인지적 능력의 높고 낮음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教育的 量과 質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非認知的 能力도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아무래도 인지적 능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2) IQ檢査가 認知的 能力을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기로 한다.



〈그림 1〉 不平等의 發生經路

非認知的能力이란 知的인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비인지적 능력의 첫번째 유형은 情緒的인 것으로서 成就動機, 推進力, 勤勉性, 指導力 등을 의미한다. 두번째 유형은 肉體的인 것으로서 힘, 손재주, 均衡感覺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유형은 心理的인 것으로서 外向性의 정도, 緊張에 대한 반응, 神經症狀의 정도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인지적 능력 역시 遺傳的 要因과 教育的 環境의 복합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비인지적 능력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教育의 量과 質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 기대되나, 이처럼 教育을 거치는 間接的 經路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直接的으로 그 사람의 所得水準이나 職業的 地位에 영향을 주는 폭이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성취동

기, 추진력, 근면성, 지도력 등의 정서적 능력이나 體力 혹은 外向의인 성격 등의 요인이 어떤 사람의 經濟的 成敗에 상당히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認知的·非認知的 能力과 동일한 차원에 속해 있는 특성으로서 어떤 사람의 經濟的 地位에 무시 못할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容貌라든가 말하는 방식, 웃는 방식 혹은 기타의 행동거지에서 나타나는 個人的 特性을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해 能力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에 입각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별을 두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에서 그와 같은 구별은 상당히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적 지위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들 개인적 특성도 앞서의 能力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과 가정환경의 복합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지금까지 설명된 세 가지의 能力과 特性이 주로 教育水準을 통해 어떤 개인의 職業的 地位나 勤勞所得水準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³⁾ 사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회에서 개인의 教育水準은 그 사람의 經濟的 地位에 다른 어떤 變數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모든 변수에 대한 고려를 捨象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교육수준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직업적 지위나 근로소득 수준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개인의 教育水準이 그 사람의 能力을 반영하여 경제적 지위로 이어지는 經路 이외에도 教育 그 자체가 독립적인 영향을 갖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능력의 많고 적음과 교육수준의 높고 낮음이 전혀 아무런 相關關係를 갖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다 높은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의 독립적인 영향은, 教育機關이 능력없는 사람조차 높은 生産力을 가진 사람으로 변형시킬 만큼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생산성과의 관련과는 별개로 學閥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할 때 특히 커지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림을 보면 세 가지의 능력 및 특성, 즉 認知的 能力, 非認知的 能力과 個人的 特性이 教育水準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職業的 地位나 勤勞所得으로 點線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주요한 영향의 經路는 實線으로 나타내는 반면, 副次的인 영향의 경로는 點線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므로 그림이

(3) 세 가지의 能力 혹은 特性 중에서 예외적으로 個人的인 特性만은 教育水準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직업적 지위나 근로소득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림에 보여지고 있음에 주목하라.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의 능력 및 특성이 직업적 지위나 근로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積極의인 성격의 소유자는 바로 그 성격 때문에 그가 받은 교육 수준과는 별개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용모나 話法이 세련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빨리 昇進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遺傳的 要因과 教育的 環境이라는 不平等의 畧이 어떤 경로를 통해 職業的地位나 勤勞所得에 있어서의 격차로 귀결되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그림에 보여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불평등의 畧, 즉 가정의 經濟的 環境에 있어서의 격차는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무슨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인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의 경제적 환경은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의 贈與 또는 相續이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가 자식의 教育費를 부담하는 것이 하나의 贈與行爲라고 한다면 경제적 환경이 어떤 사람의 教育水準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獎學金制度가 잘 갖춰져 있는 사회라 할지라도 가난한 집안의 아이보다는 부유한 집안의 아이가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경향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가 앞서 설명한 認知的 혹은 非認知的 能力에 있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보다는 순전히 경제적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크리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자신이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자신이나 가족의 生計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經濟的 環境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부유한 가정에서는 課外라든지 留學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자식의 교육수준을 밀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經濟的地位는 자식이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서 직업활동을 할 때 은근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⁴⁾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진 經濟的 環境의 보다 直接的인 영향은 그의 財產과 非勤勞所得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특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많은 遺産을 상속받은 사람은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극히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經濟的 地位의 上層部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 중의 상당수가 이 유형에 속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 美國같이 비교적 자신의 능력에 의해 사회적 진출이 주로 좌우되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회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은근히 자식을 밀어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Okun(1975, p.76)을 보라.

물론 贈與나 相續에 의해 취득된 財産 이외에도 貯蓄에 의해 형성된 재산도 있을 수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각각의 比重이 어떤 것인가는 實證의인 문제이며 다음 節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재산은 物的 投資行爲에 사용되어 非 勤勞所得을 창출하고, 이 중 저축된 부분은 재산을 增殖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마치 「돈이 돈을 낳는」 것과 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 參與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력의 격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관계에는 偶然性이란 예기치 않은 제 3의 요인이 작용될 수 있다. 예컨대 知能이 높은 사람이 대개 높은 學歷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은 높은 지능을 가졌는데도 不運에 의해 낮은 학력 밖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지능과 똑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운이 좋아 존경받고 보수도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생기는 반면에 운이 나빠 존경받지도 못하면서 보수까지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 또한 物的 投資行爲에 대한 收益도 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經濟的 地位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운수에 의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偶然性 혹은 운수라는 것도 앞에서 설명된 여러 不平等의 짝 못지 않게 중요한 불평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특정한 遺傳的 要因이나 教育的・經濟的 環境을 갖춘 가정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갖게 되는 운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實證分析의 技法으로는 현존하는 不平等 중에서 운에 의한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힘들다. 고작해야 모든 체계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殘餘分을 偶然性에 의한 것으로 돌리는 방법만이 가능한데 이것이 무척 부정확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다만 개인적인 운에 따라 생겨나는 不平等性도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추측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2. 社會的 要因

이상에서는 社會的 與件이 주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개인적인 특성이 그의 경제적 지위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따라서 한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不平等이 순전히 個人的인 요인에 의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분배문제에 관한 현존하는 연구업적 중 대부분이 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논의에 그치고 있어 社會的 次元에

있어서의 불평등성이란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主流經濟學的의 限界點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社會的 與件의 變化가 생길 때 分配上的의 變化가 생겨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모든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不平等의 深化를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小節에서는 분배상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 오리라고 기대되는 여러 사회적 요인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 사회적 요인들은 크게 보아 다음의 두 유형, 즉 주어진 經濟・社會體制의 페두리안에서의 政策, 制度 혹은 市場狀況과 관련된 유형의 것들과 體制 그 자체의 문제에 속하는 유형의 것들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다.

1) 體制內的 要因

〈그림 1〉에 보여지고 있는 세 개의 同心圓 중 가운데에 있는 것은 個人的인 차원에서 발생한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이 政策, 制度 혹은 市場狀況의 특성에 의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 중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財政制度

現代經濟에 있어서 政府의 經濟的 役割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國民生産 중에서 國家財政이 차지하는 비중의 점진적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막대한 양의 경제적 자원을 租稅 등의 수단에 의해 흡수하고 각종의 支出項目을 통해 다시 방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再分配效果를 창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재분배효과는 意圖된 부분도 있고 의도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의도된 부분이란 것은 정부가 명백하게 再分配를 염두에 두고 재정기구를 운용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의도되지 않은 부분이란 다른 목표를 위해 실시된 재정정책이 부수적인 재분배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所得과 富의 再分配는 머스그레이브(R. Musgrave, 1959)가 財政의 三大主要機能 중 하나로 꼽고 있을 만큼 중요한 기능으로서, 거의 모든 정부가 이를 위한 각종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福祉社會 건설의 당위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재정의 재분배기능은 한층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財政의 再分配機能은 歲入과 歲出 양측면을 통해 발휘될 수 있다. 세입의 측면에서는 주

(5)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의 不平等性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논의가 含蓄 정도로 단편적인 취급을 받아 왔을 뿐 분배이론에 본격적으로 吸收・統合되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로 累進稅制의 운용에 의해 재분배효과가 나오고 있다. 과연 누진세제가 필요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있으나, 이제 누진세제는 거의 모든 나라의 재정제도에 불박혀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현실이다.⁽⁶⁾ 그러나 累進稅率의 構造는 스웨덴에서처럼 매우 강한 것에서부터 美國에서처럼 매우 약한 것까지 광범한 범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누진세제에 의한 재분배효과는 富裕層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안게 함으로써 可處分所得의 平等化를 가져 오는 방향으로 나타날 뿐, 가난한 계층의 가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서는 작용하지 못한다.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세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 준다는 의미에서의 「負의 所得稅(negative income tax)」가 누진세제의 論理的 延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나라는 지극히 드물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치분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재분배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歲出側의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現金으로 생계를 보조해 주거나, 住宅, 敎育 혹은 醫療 서비스 등의 現物로 도움을 주는 각종의 社會保障 프로그램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재분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말한 누진세제의 운영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可視的인 再分配效果를 창출할 수 있다.

財政이 再分配效果를 창출하는 또 하나의 수단은 累進的인 相續稅 및 贈與稅이다. 만약에 잘 운용되지만 한다면 이를 통해 經濟的 地位가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세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중요한 平等化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節稅의 기법이 너무나도 잘 개발되어 있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거의 有名無實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상에서 설명된 財政의 의도적인 再分配效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不平等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의도되지 않은 재분배효과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貯蓄 및 投資의 促進을 위해 여러가지 租稅上의 誘因을 제공하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많이 정리되었다고는 하나 기업활동을 부추기기 위한 각종의 稅制上 優待措置를 운용해 온 바 있다. 高度成長期의 日本에서도 이와 비슷한 각종의 우대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 있다.⁽⁷⁾ 근래에 들어와 美國 등 여러 나라에서 供給重視經濟學(supply-side economics)의 영향을 받은 경제정책들을 시험한 바 있는데, 이 정책의 중심과제는 저축과 투자의 촉진에

(6) 累進稅制에 대한 反論의 논리적 근거로는 Blum and Kalven(1953)을 참조하라.

(7) 고도성장기의 日本에서 실시된 각종의 투자촉진책에 대해서는 拙文(1989)을 참고하라.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의 운용이 成長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分配狀態를 더욱 不平等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왜냐하면 貯蓄이나 投資는 주로 富裕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들에 대한 특혜는 곧바로 부유층에 대한 특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장의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低所得層에도 돌아간다고도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일단은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租稅行政의 便宜를 위해 附加價値稅 등 間接稅 위주로 조세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분배상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각자의 經濟的 能力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져야 한다는 公平性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납부자의 능력이라는 요소가 전혀 무시된 간접세 위주의 조세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租稅抵抗을 최소화시키면서 쉽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자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그 결과 간접세의 逆進性이 다른 종류의 조세가 갖는 累進性을 상쇄시켜 조세제도 전반의 누진성은 미미한 정도밖에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도 이것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여튼 각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財政制度의 특징은 그것이 의도된 것이었든 혹은 의도되지 않은 것이었든 간에 分配의 狀態에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그 변화가 항상 평등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2) 經濟政策의 基調

각 나라의 각 時點에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經濟政策의 基調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開發途上國의 경우라면 成長에 치중하는 개발전략을 채택한다든가 아니면 部門間의 均衡을 중시하면서 성장하는 전략을 선택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先進國의 경우라면 인플레이션의 抑制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든가 아니면 失業의 방지에 보다 큰 역점을 두는 등의 정책기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책기조 상의 차이가 分配狀態의 차이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

우선 개발도상국이 선택한 開發戰略의 예를 통하여 이 점에 관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만약 成長 그 자체를 極大化하는 전략을 채택한다면 모든 경제적 자원을 成長潛力이 가장 큰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 의도된 不均衡投資를 통해 성장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分配上的 不平等이 심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集中投資의 대상이 되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사이의 격차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집중투자의 惠澤이 주로 부유한 企業家들에게 귀속되

는 현상에 의해서도 불평등의 심화가 가속될 수 있다.

지난 30년간 韓國經濟가 걸어 온 길이 바로 이 길이었으며,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는 곤란한 일이라 하더라도 成長一邊倒의 開發戰略 때문에 생겨난 불평등화의 요인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成長初期段階에 있어서는 不平等化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라는 사실을 들어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으나, 성장일변도의 개발전략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분배상태의 악화에 一助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先進國의 경우는 經濟의 安定을 도모함에 있어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失業의 방지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분배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메트카프(C. Metcalf, 1969), 마이러(T. Mirer, 1973a, b), 블라인더(A. Blinder, 1987), 블랭크—블라인더(R. Blank and A. Blinder, 1986), 놀란(B. Nolan, 1987) 등의 연구에 의하면 貧困層의 경제적 상태는 경제가 好況局面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낮고, 不況局面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못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빈곤층에 대해 미치는 惡影響의 관점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보다 失業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중점을 두는 政策基調보다는 失業의 퇴치에 중점을 두는 정책기조 하에서 보다 平等한 分配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政治的으로 保守의인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일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進步의인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일수록 失業의 害毒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3) 勞動市場의 狀況

주어진 能力, 教育水準 및 技術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소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상황변화에 의해 분배상태의 변화가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供給에 비해 이에 대한 需要가 전반적으로 강하가 아니면 약한가에 따라 平均의인 賃金水準의 騰落이 생겨날 수 있고, 각자의 所得 중에서 勤勞所得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相對的인 位置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똑 같은 소득을 얻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전부 勤勞所得이며 다른 한 사람은 전부 非勤勞所得이라고 하자. 이 두 사람 사이의 상대적 위치가 임금수준의 등락에 따라 변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노동에 대한 전반적 需要의 양상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럿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生産品에 대한 需要의 상황일 것이다. 즉 好況局面에 있을 경우 生産品에 대한 활발한 수요는 노동에 대한 활발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며, 반대로 不況局面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도 미약한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勞動에 대한 수요가 派生 需要라는 성격으로부터 바로 도출될 수 있는 예상이다.

또한 勞動市場의 供給側面에서 본다면 노동의 組織化 정도가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勞動組合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임금수준을 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交渉力은 다음과 같은 政治的·經濟的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억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임금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짐작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最近의 경험을 보면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억압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제거되기 시작했던 1988, 89년 즈음부터 勞使紛糾가 빈발하고 그 결과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높은 率의 賃金上昇을 유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需給狀況에 따라 個人의 소득이 달라질 수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 내부의 構造的 要因 때문에 개인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어느 경제이든 간에 번성하는 産業과 쇠퇴해 가는 산업이 共存하고 있기 마련이며, 이와 같은 패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주 바뀌어 가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技能이 마침 쇠퇴해 가는 산업에만 쓰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의 소득은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構造的 要因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득을 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번성하고 있는 산업에 주로 고용될 수 있는 기능의 보유자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勞動市場의 狀況은 熟練勞動者와 非熟練勞動者 사이의 相對的 임금격차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한 예로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숙련된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점차 작아져 兩者 간의 임금격차는 축소되게 된다. 루이스(A. Lewis)가 말한 바와 같은 숙련되지 못한 勞動力의 「無制限的인 供給(unlimited supply)」이 존재하는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非熟練勞動者의 임금은 낮을 수밖에 없지만, 무제한적인 공급이 더 이상 가능해지지 않을 때 이들의 임금은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4) 價格의 變動

價格의 전반적인 騰落이나 相對價格構造에 있어서의 변화가 분배상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을 때 각 사람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득을 보기

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所得이나 財産이 再分配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재분배가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일어날지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인 손해를 본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블랭크-블라인더(1986)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不平等 深化의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을 때 固定된 收入을 가진 사람, 남에게 빚을 주고 있는 사람 등이 주로 손해를 본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유형에 속하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불평등화의 정도가 상당히 미약한 것이라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간다고 할 수 있다.

分配狀態에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변화보다 相對價格構造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특히 各種 資産間의 가격변화율의 차이는 분배상태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다.⁽⁸⁾ 예를 들어 不動産이나 證券의 가격이 暴騰한다면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주로 富裕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英國의 「所得 및 財産의 分配에 대한 王立委員會(Royal Commission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의 『第七報告書』는 商品, 株式, 住宅, 土地 등의 價格變化推移 하에서 1960년에 이들 각 자산에 1,000파운드씩을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1976년에 얼마만큼의 實質資産價値를 갖게 되는가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表 1>에 정리되어 있는 이 계산결과에 의하면 住宅에 투자한 사람이 제일 큰 이득을 본 반면에 債券에 투자한 사람이 제일 큰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同報告書는 당시 英國의 階層別 資産保有 경향에 입각하여 판단해 볼 때 각 자산의 가격 변동은 財産의 분배상태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결론짓고 있다. 첫째, 株式은 주로 富裕層이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가격의 상승은 不平等의 深化를 가져온다. 둘째, 住宅의 소유는 上層部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中産層의 비중이 크므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平等化를 가져오게 된다.

同報告書가 실제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英國社會에서 財産의 크기로 보아 最上位 1%에 속하는 사람들은 資産價格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도로 그 相對的 地位가 格下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재산이 영국 전체의 재산에서

(8)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財産의 분배상태이다. 자산가격의 변화가 있을 때 所得의 분배상태에도 어떤 영향이 오겠지만 보다 현저한 변화는 재산의 분배상태에 나타날 것이다.

<表 1> 1960년에 投資된 £1,000의 1976年 資產別 價値(英國) (單位: £)

資 產 形 態	1976년의 名目價値	1976년의 實質價値
現 金 資 產	1,000	316
現 物	3,167	1,000
債 券	438	138
株 式	1,475	466
住 宅	5,408	1,708
土 地	5,262	1,662

資料: Royal Commission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Report No. 7, 1979, p.124.

차지하는 비중이 1972년에는 22.1%였던 것이 1976년에는 16.9%로 떨어져 4년의 기간 동안에 무려 5.2%만큼이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에 上位 2%에서 5% 사이에 속한 사람들의 재산비중은 자산가격의 변화 때문에 2.9%만큼 감소한 반면에, 上位 6%에서 20% 사이에 속한 사람들의 비중은 1.3%만큼 상승한 것으로 계산되었다.⁽⁹⁾

韓國의 분배상태에 관한 最近의 動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資產價格의 변동에 대한 고려를 빼놓는다면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1988, 89년에 걸친 격렬한 勞使紛糾의 결과 전반적인 賃金水準이 현저히 상승하게 되었으며, 物價上昇을 감안한 實質賃金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所得分配의 不平等度를 나타내는 지니係數를 낮추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왔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만큼 분배상태가 평등해진 것으로 느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1990년 초의 사회 분위기로 볼 때, 근로자들을 포함한 中·下層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貧富隔差는 지난 몇 년 사이에 훨씬 더 벌어진 것으로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¹⁰⁾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게 한 것은 다름아닌 不動產價格의 暴騰이다. 不動產所有의 偏重이 극도로 심한 상황 하에서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富裕層에게 엄청난 규모의 資本利得을 가져다 주는 한편, 全國民의 거의 반에 달하는 無住宅者에 대해서는 生計의 基盤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¹¹⁾ 그와 같은 여건 하에 賃金上昇率이 한 자리 숫자가 되어야 한다느니 최소한 두 자리 숫자가 되어야 한다느니 하고 다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9) 여기에서 「몇 %만큼 변화했다」라는 표현은 a%에서 b%로 (b-a)%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left(\frac{b-a}{a} \times 100\right)\%$ 의 변화라는 뜻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0) 金善雄教授(1989)의 設問調査結果에 의하면 5년 전과 비교한 貧富隔差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물음에 무려 61.1%의 응답자가 더 심해졌다고 대답한 반면에, 줄어들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孫在英博士(1990)의 추계에 의하면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1990년 초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았던 1988년만 해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부터의 資本利得이 67조 9,02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같은 해 GNP의 54.9%, 그리고 被傭者報酬 전체의 135.4%에 달하는 규모이다.

질 것이다. 설사 임금이 두 배로 된다 해도 하루 아침에 傳黃金을 두 배로 올려 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不動產價格의 주기적인 폭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는 株式價格의 동향도 不平等 深化의 한 요인이 되어 왔다. 1989년 말에서 1990년에 이르는 시기에서는 약간 예외적인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는 빠른 속도로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富裕層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資本利得源을 제공하였다. 綜合株價指數는 1987년 한 해에만도 48.1%, 그리고 1988년에는 42.1%나 상승하여 주식보유자가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득하였음은 물론, 이와 같은 자본이득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주식보유자의 주머니로 들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不動產價格 혹은 株式價格의 변동에 의한 분배상태의 변화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所得分配統計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소득분배통계와 피부로 느끼는 분배의 상태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5) 差別, 不正·腐敗 및 그 밖의 社會的 與件

지금까지 설명된 經濟的 要因 이외에도 각종의 社會的 要因이 분배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분배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으로서 우선 생각나는 것은 특정집단에 대한 差別(discrimination)이다. 美國社會의 黑人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어떤 사회든 나뉠대로의 差別對象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사람이 운나쁘게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일원이 되면 그는 십중팔구 그의 潛在力에 상응하는 經濟的 地位를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

差別은 물론 不平等을 深化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차별에 의해서 창출된 불평등은 여타의 이유에 의해서 생긴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차별에 의한 불평등은 能力이나 努力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불평등과는 달리 하등의 肯定的인 社會的 機能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차별에 의해서 생긴 불평등은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만 영구히 劣惡한 위치에 몰아넣는 결과를 빚게 된다. 즉 社會正義란 차원에서 볼 때도 지극히 부정적인 형태의 불평등이 창출된다는 말이다.

어느 사회에나 얼마만큼은 있게 마련인 不正·腐敗의 현상도 분배상태에 영향을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부정·부패는 經濟的 發展의 정도가 低迷하며 政治的 民主化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後進社會에서 특히 널리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사회가 거의 예외없이 극심한 분배의 不平等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不正·腐敗가 만연된 사회에서는 分配構造의 上層部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粹富

들이 끼어들게 됨으로써 분배구조 전체에 대한 正當性의 危機를 초래하게 된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만한 經濟的地位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면 대중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貧富의 차이가 생기며 그러한 차이는 과연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는 축적된 모든 富를 罪惡視하는 냉소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부패에 의해 창출된 불평등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差別에 의해 생긴 불평등 못지 않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똑같은 정도의 불평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겨나게 된 원인에 따라 더 큰 葛藤을 유발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分配의 不平等에 대해 논의할 때, 단지 결과로서의 불평등의 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발생원인의 質的인 差異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불평등의 本質을 놓치고 마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생각한다.

분배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社會的 與件의 또 하나의 예로서는 結婚에 관한 慣習을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끼리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관습이 정착되어 있느냐, 아니면 兩家의 經濟的地位에 관계없이 섞여서 결혼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본래 社會學的 문제일테지만 그것의 經濟的 含意, 즉 분배상의 불평등에 대한 함의는 블라인더(A. Blinder, 1973), 브리튼(J. Brittain, 1977)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연구되어 왔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끼리끼리 결혼하는 관습이 있는 사회에서는 時間이 經過해도 불평등의 정도가 감소되지 않는 반면, 섞여서 결혼하는 관습이 있는 사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점차 平等化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¹²⁾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문제는 한 사회의 실제에 있어서의 結婚慣習이 兩者 중 어느 것에 가까운지의 實證的인 면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방면에 대한 체계적인 社會學的 研究는 거의 全無한 것 같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相續制度에 있어서 長子가 전부 상속하느냐 아니면 자식들이 고르게 나누어 상속하느냐의 차이도 불평등의 時間的 推移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長子가 전부 상속하는 경우보다 고르게 나누어서 상속하는 경우에서 平等化의 진행이 빠르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結婚의 慣習이나 相續制度 이외에도 분배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12) 時間이 經過한다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世代가 다음 世代로, 그 다음 世代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끼리끼리 결혼하는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 兩家의 財産이 합쳐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 중요하다.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2) 體制自體의 問題

이상에서의 不平等과 관련된 社會的 要因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資本主義的 市場經濟 體制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이렇게 주어진 體制 내에서의 여러 불평등 발생요인을 고찰 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만이 唯一한 체제는 아니며 社會主義體制 등 다른 체제의 테두리가 주어질 수도 있다.

體制 그 자체가 달라질 때 不平等의 양상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개의 同心圓 중 가장 밖에 있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 선택하고 있는 體制의 성격이 分配構造의 최종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個人的인 能力이나 特性, 그리고 社會的인 與件들이 결국은 주어진 體制라는 틀 안에서 구체적인 불평등으로 시현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一般化해서 단정하기 힘든 일이지만 分配狀態는 완전히 自由放任的인 市場經濟 體制下에서 가장 불평등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混合經濟體制가 바로 이와 같은 자유방임체제 하에서 생기는 극단적인 불평등을 다소간 시정하고자 하여 생겨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배상태가 가장 평등하리라고 이론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모든 生産手段이 公有로 되어 있는 社會主義體制가 될 것이다. 생산수단이 공유로 된 상황에서는 각자의 勤勞所得만이 거의 유일한 소득이 되므로 富의 偏重이 일어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計劃當局이 賃金構造 자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격차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理論的 可能性에 입각한 一般論일 뿐 구체적인 사회를 놓고 비교해 볼 때 그와 같은 분배상태와 체제와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 한 예로 최근 東歐 社會主義國家에서 발생한 大變革은 대중의 광범한 不滿에서 촉발되었고, 그 불만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黨幹部와 高級官僚 등 소수 特權階層의 분수에 넘친 사치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¹³⁾

결국 개별적인 사회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13) Davis and Scase(1985)에 의하면 社會主義社會에서도 階級이 尙存하고 있으며, 특히 支配階級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지배계급은 黨·官僚體系의 最上位에서 生産과 分配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民衆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배계급이 많은 特權을 獨占하게 될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一般論에서 예상하고 있는 不平等度의 순서가 현실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여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특정한 體制의 선택이 個人에게는 뛰어난 수 없는 테두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체제의 선택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이 달리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III. 不平等發生原因의 分析

앞 節에서는 分配의 不平等을 일으키는 諸要因들을 平面的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 그러므로 이 節에서는 이들 여러 요인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정리함으로써 불평등 발생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불평등 발생의 諸原因을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정리하고 분석하게 될 것이다.

우선 첫째로 현존하는 不平等 중 어느 만큼 큰 부분을 윗 世代로부터 물려 받은 遺産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분석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즉 世代間에 經濟的 地位가 世襲되는 정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개인이 특정한 家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經濟的 運命이 결정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것은 불평등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不平等 창출과정에서의 教育의 役割만을 따로 분리하여 고찰하게 된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된 바 있지만 教育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能力이나 特性이 구체적인 經濟的 地位의 不平等으로 실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中間通路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教育의 역할만을 따로 분리하여 고찰해 볼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세계로는 여러가지 原因에 의해서 생기는 불평등을 개념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除去가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한 성질의 불평등과 그렇지 않은 성질의 불평등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등의 창출과정에서 政府가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나,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研究主題가 될 만큼 방대한 것이어서 다른 論文을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1. 經濟的 地位는 世襲되는가?

앞 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不平等의 작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배태되고 있는 것이므로 人間의 社會에서 완전한 平等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을 託兒所에 강제로 맡기게 하여 同一한 環境에서 성장하게 만들 뿐 아니라, 知能이

뛰어난 아이는 放置해 두는 반면 지능이 모자란 아이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 均等한 지능을 갖게끔 하는 등의 갖가지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불평등의 삭을 자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아니 아무리 과격한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均一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라고 하는 편이 옳을지 모른다.

어떤 사람이 어떤 特定한 家庭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의 自發的 意志와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偶然性 때문에 그의 經濟的 生涯의 많은 부분이 사전에 결정지워져 버리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虛無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나쁜 여건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으름쟁이보다도 못한 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사전에 이미 결정지워진 것이라면 더 이상 政策이라든가 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 한 世代로부터 다음 세대로의 경제적 지위의 世襲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세습의 정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되는가, 다시 말해 위 세대와 아래 세대 사이의 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큰 相關關係를 갖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實證的인 문제로 귀착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행해진 研究結果를 가지고 활용할 길은 거의 막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外國의 社會와 우리의 사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일단 외국에서 얻어진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존하여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다.

앞 節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經濟的 地位의 世襲은 크게 보아 다음의 두 가지 經路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 경로는 財產의 직접적인 贈與 및 相續을 통한 物質的 經路이며, 두번째 것은 遺傳이나 環境을 통한 非物質的 經路이다.

1) 物質的 經路

(1) 研究의 方法論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財產 중에서 스스로 축적한 부분보다 증여나 상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의 상대적 비중이 커질 때 우리는 物質的 經路를 통한 世帶間的 경제적 지위 세습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상대적 비중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측정해내느냐에 있다. 이 방면으로의 연구에서 채택되어 온 方法論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로 하베리(C. Harbury, 1962), 하베리-맥마혼(C. Harbury and P. McMahon, 1973), 하베리-히친스(D. Harbury and D. Hitchens, 1976), 포툰(*Fortune*)誌 등에 의해서 행해진 바와 같이 財産分布의 最上層部를 접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 事例分析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존할 경우 몇몇 특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비교적 深度있는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에서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결점이 있다. 또한 사례분석을 하면서 분석자의 主觀이 깊숙히 개입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프로젝트어-와이스(D. Projector and G. Weiss, 1966), 발로우 等(R. Barlow *et al.*, 1966)에 의해서 취해진 방법으로서 設問調査를 통해 응답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財産 중 얼마만큼이 相續에 의한 것입니까?」라는 식의 질문을 통해 응답자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하여 대답하게 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設問調査의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모두 共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의 방법은 앳킨슨(A. Atkinson, 1971), 브리튼(J. Brittain, 1978) 등처럼 年齡과 財産을 연결시켜 봄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相續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의 상대적 크기를 유추하는 방식이다. 만약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다 스스로의 蓄積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면 연령과 재산의 크기를 연관지어 관찰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全人口에 대해서 측정된 財産의 集中狀態와 各 年齡層別로 구분하여 측정된 집중상태를 비교할 때 後者の 集中度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이다. 상속된 재산은 별 의미가 없고 스스로 저축해서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재산의 크기는 나이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며, 두 사람의 나이가 비슷하다면 재산도 상당히 비슷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全人口의 財産集中度가 한 연령층 내의 집중도보다 당연히 높게 나오게 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스스로 축적한 재산이 대부분일 때 財産分布의 上層部는 대부분 은퇴 직전의 나이 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연령과 재산을 결부시켜 조사한 결과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 보면 相續과 스스로의 蓄積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 네번째의 방법은 計量經濟學的 技法에 의해 자식과 부모의 經濟的 地位, 특히 財産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료만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신빙성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충분한 자료를 얻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브리튼(1978), 멘치크(P. Menchik, 1980) 등이 이 접근법에 의해 문제의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2) 英國의 事例

한 사회에 존재하는 富 중에서 얼마나 큰 부분이 相續된 財産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英國에서 특히 활발하게 행해져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방면으로의 연구의 역사는 웨지우드(J. Wedgwood, 1929)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英國社會의 경우 거대한 富의 소유자는 대개 부유한 가문의 자식들이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큰 財産을 모은 사람은 그 수가 지극히 적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영국사회에서 相續된 재산에 의한 經濟的 地位의 世襲이 높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웨지우드의 주장과 똑 같은 내용의 주장이 30여년 후에 하베리(1962)에 의해 되풀이되었다. 그는 1956년과 1957년 사이에 죽은 부유한 사람들의 人的 背景을 조사했는데, 이들 중 67%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적지 않은 遺産을 받았음을 발견하였다.⁽¹⁴⁾ 하베리는 그 후 1973년에 맥마혼과, 그리고 1976년에는 히친스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60년대와 70년대의 새로운 자료들을 분석했는데, 역시 相續이 富의 形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점에서 볼 때 1960년대의 英國社會는 1920년대—웨지우드가 조사했던 시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1970년대에 와서야 상속의 비중이 약간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결론은 앳킨슨(1971), 울톤(N. Oulton, 1976), 데이비스-셔록스(J. Davies and A. Shorrocks, 1978) 등에 의해서도 제시되고 있다. 그들은 年齡과 財産을 연결시켜 관찰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앳킨슨은 다음과 같은 관찰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첫째로 <表 2>에서 볼 수 있듯이 人口 全體에서 財産保有 上位 1%의 사람이 차지하는 재산의 비중이 31.5%인데, 男子의 경우 각 年齡層 속에서 上位 1%가 점유하는 비중이 이보다는 작지만 그리 크게 작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女子의 경우에는 세 연령층에서 31.5%를 넘는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둘째로 1968년 현재 125,000파운드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거의 1/3에 달하는 사람이 45세 이하라는 사실이다.⁽¹⁵⁾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사실은 영국사회에서 스스로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 재산의 비중보다 相續에 의한 것의 비중이 더 큰 것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

(14)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56년과 1957년 사이에 죽은 사람 중 재산이 십만파운드에서 이십만 파운드 사이에 있는 사람의 표본 391명중 67%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만파운드 이상의 유산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Harbury는 만파운드란 금액이 한 世代 前에는 매우 큰 돈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 중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진 사례가 있을텐데 그는 이 점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15) 이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英國社會의 最上位 0.1%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表 2〉英國의 性別・年齡別 財産分布：各 財産階層의 占有比率(1963~67年)

(單位：%)

연령층	남 자			여 자		
	上位 1%	上位 5%	上位 10%	上位 1%	上位 5%	上位 10%
25~34	31.2	50.5	64.1	54.8	80.6	92.7
35~44	27.5	49.3	63.1	43.9	74.6	88.5
45~54	28.3	52.7	66.8	38.2	66.4	81.2
55~64	26.8	51.2	66.0	29.0	56.9	71.5
65~74	27.5	52.8	68.1	26.8	54.1	69.3
75~84	28.9	57.1	72.4	26.4	53.6	68.8
85이상	30.4	60.1	74.7	27.5	56.8	72.2
25세 이상의 全人口	31.5	58.3	72.7	31.5	58.3	72.7

資料：Atkinson (1971).

한 근거가 된다. 울튼과 데이비스-셔록스도 이와 같은 앳킨슨의 의견에 대체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英國社會에 있어서의 物質的 經路를 통한 경제적 지위의 世襲이 비교적 최근까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으로 쏠리고 있는데, 오직 루빈스타인(W. Rubinstein, 1974)만은 최근에 들어 오면서 스스로의 힘에 의해 富를 축적한 사람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주목을 끈다. 그는 스스로 富를 축적한 범주에 들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1900~29년의 기간에서는 12%이던 것이 1960년대에 들어 오면서 31%로 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앳킨슨(1975)은 루빈스타인이 연구의 대상을 100만파운드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시킨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중 2/3에 달하는 사람들이 相續에 의해 백만장자의 班列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연구 결과가 모두 소수의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이 추출된 것이어서 社會全體에 대해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限界點을 가지고 있다.

(3) 美國의 事例

英國의 경우에는 이처럼 相續을 통한 경제적 지위의 世襲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반면에, 美國의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經濟雜誌인 포문誌는 1957, 1968, 1973년에 걸쳐 미국의 백만장자들에 대한 事例分析을 행한 바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는 自手成家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섞여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 잡지의 분석결과를 보면 가

장 큰 재산을 가진 100명 남짓한 사람들 중 약 반이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나머지 반이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브리튼(1978)은 포퓰誌의 판정기준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1968년 현재 약 10억 내지 15억달러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폴 게티(Paul Getty)가 그의 부모로부터 200만달러 정도를 물려 받았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금액은 10억달러가 넘는 현재의 재산에 비하면 양동이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가 상속받을 당시 스스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200만달러였다면 그의 富 중 50%가 相續에 의한 것이라는 말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발로우 等(1966)은 부유층에 대한 設問調查에서 현재의 全財産 중 얼마나 큰 부분이 贈與나 相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가를 물었다. 그 결과 부유층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20% 미만이 증여나 상속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질문한 방식에 증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¹⁶⁾

프로젝터-와이스(1966)도 비슷한 방법으로 相續財産의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全財産 중에서 상속에 의한 것이 「全無함」, 「약간임」, 「어느 정도 됨」, 그리고 「상당함」 중의 하나로 대답하게 유도하였다.⁽¹⁷⁾ 이들이 정리해 놓은 결과에 의하면 全無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매우 컸으며, 상당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中·下位 財産階層에서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재산이 커질수록 높아져, 最高財産階層인 50만달러 이상 보유계층에서는 그 비율이 34%에 이르렀다. 하여간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財産의 相續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단정짓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의 여러 연구 결과를 전부 비판하고 美國社會에 있어서의 相續된 財産의 중요성은 매우 큰 것이라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브리튼(1978)이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미국사회에 현존하는 財産의 분포상태가 단지 개인 스스로의 蓄積에 의해서만은 아주 부분적으로 밖에 설명되지 못하며, 相續된 財産이라는 요인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의 方法論은 앞에서 언급한 연구에서 채택되었던 것들에 비하면 훨씬 더 세련된 것으로서 그의 결론이 가지는 설득력도 그 만큼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예를 들어 Brittain(1978)의 비판을 참조하라.

(17) 이들의 연구는 美聯邦準備銀行이 주관해서 행해진 것이므로 페페로 언방준비은행의 연구로 인용되기도 한다.

코트리코프-서머즈(L. Kotlikoff and L. Summers, 1981)는 브리튼보다도 상속된 재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끈다. 그들은 현존하는 재산보유의 양상이 生涯假說(life-cycle hypothesis)에 의해 예측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주요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생애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불과 2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相續된 財産에 의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상속된 재산의 중요성이 이 정도로 크다는 것은 확실히 놀랄 만한 결론으로서, 자연히 그들의 결과에 대한 회의가 상당히 광범하게 제시되었다. 허드-먼대커(M. Hurd and B. Mundaca, 1989)가 그 한 예로서, 이들은 1964년에 행해진 設問調査의 결과와 1983년의 설문조사 결과 그 어느 것으로도 코트리코프-서머즈의 극단적인 결론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⁸⁾ 상속된 재산의 비중이 80%나 된다는 주장은 확실히 너무 지나친 느낌이 있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상속의 중요성이 생각보다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면에서는 그들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를 준다고 할 수 있다.

(4) 綜合的 評價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英國社會에서 相續을 통한 富의 世襲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큰 이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美國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의견의 일치를 보기는 힘들다, 브리튼의 연구결과가 가진 설득력을 인정한다면 역시 상속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의 事例分析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은 富裕層으로 갈수록 財産相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상속과 관련된 하나의 윤곽을 그려 볼 수 있다. 즉 全人口의 대부분은 이렇다 할 재산의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수의 富裕層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윤곽이다. 그러므로 全社會에 걸친 富의 分配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렇다 할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재산상속이 富의 分配狀態와 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⁹⁾ 그렇지만 재산분포의 最上位를 점하고 있는 계층에서는 상속재산이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富裕層은 代를 이어서 변함없이 上層層을 점

(18) 1964년의 설문조사는 앞에서 언급된 Barlow *et al.* (1966)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相續의 중요성을 그다지 크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이 설문조사 그 자체에 방법론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Hurd and Mundaca(1989)의 주장이 가지는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19) 相續된 財産이 현존하는 所得分配의 不平等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Blinder(1974)의 평가는 바로 이 맥락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보면 相續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相續된 財産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英國이나 美國에서 행해진 분석의 결과를 우리 社會에 그대로 代入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最上位階層에서 재산의 상속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영국이나 미국과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근래에 들어와서 이 경향이 특히 뚜렷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名目上の 높은 相續稅率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기업들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지 않은 사례를 오히려 발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所有와 經營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經營權까지 그대로 상속되는 우리의 현실은 영국이나 미국보다 世襲의 정도가 크면 컸지 결코 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 非物質的 經路

(1) 認知的 能力에의 영향

非物質的인 경로에 의한 經濟的 地位의 世襲은 주로 遺傳과 教育的 環境의 제공을 통해서 일어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두 요소는 개인의 認知的 能力, 非認知的 能力 및 個人的 特性에 영향을 줌으로써 장래의 경제적 지위를 좌우하게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지적 능력에 대한 영향이 중시되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지위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教育水準이 인지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認知的 能力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IQ檢査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IQ, 즉 知能指數는 그 사람의 인지적 능력의 代名詞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능지수가 과연 遺傳的 要因에 더 크게 영향받고 있는가 아니면 環境的 要因에 더 크게 영향받고 있는가는 心理學者 및 教育學者들에 의해 널리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연구의 결과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1970년대의 學界 분위기를 보면 지능지수의 결정에 있어 遺傳的 要因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定說로 굳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와 같은 학설을 유포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은 제센(A. Jensen, 1969), 헤른스틴(R. Herrnstein, 1971), 카터(C. Carter, 1976)등으로서, 이들은 유전적 요인이 個人間 지능지수 차이의 약 80% 내외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했다. (20)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약간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젠크스 등(1972)이다. 그는 遺傳的 要因이 지능지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잘해야 45%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5%가 環境的 要因, 20%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共分散에 의해 설명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1) 그는 환경적 요인을 다시 두 가지로 세분했는데, 하나는 家庭間的 背景差에 의한 것으로서 이것에 의해 설명가능한 지능지수의 차이가 20%이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家庭內에서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지능지수 차이의 15%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골드버거(A. Goldberger, 1979)는 다음의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實證的 研究의 결과를 모아놓고 있는데, 成人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遺傳的 要因에 의해 설명가능한 부분의 수치로서 젠크스의 것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兒童들의 知能指數 격차에서 최소한 半 이상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成人이 되면 유전적 요인은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오 등(D. Rao et al., 1976)의 연구는 성인인 경우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1%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2) 教育水準에의 영향

다음의 問題는 어떤 사람이 갖게 되는 教育水準이 遺傳이나 環境의 요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 보는 일이다. 유전이나 환경의 요인이 職業的 地位나 勤勞

<表 3> 知能指數의 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的 研究結果의 要約 (單位: %)

研 究 者	Jinks & Fulker 英 國 (1970)	Eaves 英 國 (1975)	Eaves 美 國 (1975)	Eaves 美 國 (1977)	Jencks 美 國 (1972)	Rao, Morton & Yee 美 國(1976)		Rao & Morton 美 國 (1978)	
						兒 童	成 人	兒 童	成 人
遺 傳 的 要 因	83	85	68	60	45	67	21	69	30
環 境 的 要 因	17	15	32	40	35	19	66	31	70
共 分 散	0	0	0	0	20	14	13	0	0

資料: Goldberger(1979).

(20) 여기에서 「유전적 요인이 개인간 知能指數 차이의 80%를 설명한다」는 표현은 다른 여건을 동일하게 유지시키고 遺傳子만 다르게끔 허용한 집단에서 구한 지능지수의 分散의 크기가 전체 집단에서 구한 지능지수의 分散의 80%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전자를 독립변수로 하고 지능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回歸方程式의 R^2 가 0.80이라는 뜻도 가진다.

(21) 좋은 교육적 환경이 갖추어진 가정에 좋은 遺傳的 素因을 갖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共分散에 의해 설명가능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경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所得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도 있겠으나, 일단 教育水準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직업적 지위나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보다 주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教育水準의 격차가 무엇에 의해 주로 설명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한 가지 점은 遺傳的 要因과 環境的 要因을 모두 합쳐 家族背景이라고 할 때 이것이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받게 될 교육의 수준을 상당히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받는 教育의 수준이 家族背景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연구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은 베르만-타웁만(J. Behrman and P. Taubman, 1989)의 연구로서, 이들은 교육수준 격차의 88%가 遺傳的 要因에 의해서 설명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그들 자신이 10여년 전에 내놓은 결과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어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두 사람이 1976년 美國經濟學會誌(*American Economic Review*)를 통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가능한 부분은 약 30% 정도라는 것이었다. 또한 타웁만(1976)의 단독연구는 유전적 요인에 약 40%의 설명력을 부여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각 연구들이 기초로 하고 있는 資料들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테지만, 그 정도의 큰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를 짐작하기조차 힘들게 만드는 면이 있다.

遺傳的 要因과 環境的 要因을 합친 家族背景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베르만-타웁만(1976)의 연구에서는 79%, 그리고 타웁만(1976)의 연구에서는 70% 정도일 것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다. 이에 비하면 교육수준의 격차 중 26%가 가족적 배경의 직접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그릴리키스(Z. Griliches, 1976)의 연구결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가족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의 下限線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 정도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보울즈(S. Bowles, 1972)나 젠크스 등(1972)의 연구로서 가족적 배경의 설명력에 약 50%의 수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릴리키스나 젠크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제시된 수치는 家族背景의 直接的 影響만이 그렇다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릴리키스는 가족배경이 知能指數같이 측정가능한 能力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교육수준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젠크스도 교육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가족배경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認知的 能力인데 이것은 가족배경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간접적 경로에 의한 영향도 상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육수준 격차의 최소한 半 이상이 유전이나 환경 같은 家族背景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엇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까? 그릴리키스는 가족배경에 의해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즉 교육수준 격차의 약 半 정도를 推進力, 動機, 意欲 등의 非認知的 能力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특성들이 家族背景과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遺傳되는 쪽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家庭의 분위기나 教育方式 등 환경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教育水準에 미치는 家族背景의 總體的 影響은 앞에서 언급된 數値의 정도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社會的 政策을 가지고도 교육수준의 격차를 결코 해소시킬 수 없다는 悲觀論에 빠질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상에서 언급된 연구결과가 거의 모두 美國社會라는 특수한 여건 하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성격이나 제도적·정책적 배경이 다른 곳에서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 한 예만 들자면, 나라마다 다른 義務教育制度의 양상도 지금까지 논의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실사 美國의 예에서 추출된 결과가 거의 모든 사회에 공통되는 普遍性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육수준의 격차가 사회정책을 통해 해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어떤 사람의 교육수준이 家族背景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때 그 영향은 生物學的(biological)인 것과 社會的(social)인 것이 모두 포괄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그 영향에서 생물학적 측면이 支配的인 것이 아닌 이상 가족배경이라는 것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명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겠다.

(3) 經濟的 地位에의 영향

遺傳的 要因과 教育的 環境 같은 (非物質的인) 家族背景이 어떤 사람의 經濟的 地位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앞에서 본 경우와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여기에서 인용된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美國社會를 배경으로 한 것이어서 얼마나 큰 普遍性이 있는지가 의심되며, 둘째로 매우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어 과연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우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가족배경이 經濟的 地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느냐는 물음에 대한 각양각색의 대답 중에서 한 쪽의 극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젠크스 等(1972)의 연구결과이다. 앞에서 설명된

마와 같이 그들은 유전적 요인이나 교육적 환경이 어떤 사람의 認知的 能力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사람의 教育水準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 經濟的 地位 그 자체에 대한 가족적 배경의 영향은 매우 작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들은 經濟的 地位의 한 중요 구성요소인 職業的 地位(occupational status)의 경우 認知的 能力의 격차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15~30%에 불과하며, 인지적 능력과는 관계없는 教育水準 그 자체의 독립적 영향이 40~5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²²⁾ 더군다나 나머지 부분, 즉 약 35%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알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어떤 사람의 직업적 지위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의 정도는 고작해야 30%선을 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젠크스 等(197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지위의 또 하나의 중요 구성요소인 所得의 경우 家族背景의 영향은 더욱 제한되어 있다. 즉 소득격차의 15%만이 가족배경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뿐 나머지 85%가 個人的 嗜好의 차이라든가, 가족배경과 관련없는 갖가지 個人的 特性 혹은 運數 등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흔히 논의되고 있는 機會의 均等化라는 것이 실제로 所得의 平等化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작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家族背景, 知能指數, 學校教育 등에 있어서의 均等化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막상 소득의 격차는 줄이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다.⁽²³⁾

블라우-던칸(P. Blau and O. Duncan, 1967)도 어떤 사람의 經濟的 成功에 대한 家族背景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쪽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성공이 가족배경과는 독립적인 教育水準의 차이에 의해 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가족배경이 經濟的 地位의 매우 중요한 결정인자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는 代를 이어 世襲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브리튼(1977)과 베르만-타움만(1976)이다. 브리튼은 가족배경의 차이가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지위의 격차는 전체의 34%에서 67%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數値에는 우리가 지금 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非物質的인 家族背景뿐 아니라 부모가 가진 재산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비물질적인 가족배경의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2) 認知的 能力의 격차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세분하면, 5~10%가 유전적 요인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의 격차, 그리고 10~20%가 교육적 환경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의 격차가 된다.

(23) Jencks *et al.* (1972)은 따라서 平等化를 위한 정책이 所得 그 자체를 平等化시키는 쪽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르만-타웁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所得隔差 중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53%나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가족적 배경이 敎育水準에는 물론 所得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중 한 사람, 즉 타웁만(1976)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가족배경의 차이가 소득격차의 30~55%를 설명한다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결과를 제시했다. 코코란 等(M. Corcoran *et al.*, 1976)도 가족배경이 所得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 수준의 설명력이 있다고는 밝히지 않고 있다.⁽²⁴⁾

결국 진실은 두 개의 극단적인 위치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經濟的地位가 상당한 정도로 世襲되고 있다는 개략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나마의 研究도 全無한 상태여서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피상적인 관찰에 의할 때 美國社會보다 경제적 지위 세습의 정도가 분명히 약하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할 것 같다. 더군다나 요즘에 나타나는 社會現象을 보면 그 정도가 근래에 오면서 보다 커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²⁵⁾

2. 敎育과 不平等

앞 節의 논의와 <그림 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敎育은 최초의 不平等 要因이 구체적인 經濟的地位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변수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받는 敎育의 質과 量을 平準化시킨다면 경제적 지위도 상당히 평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敎育은 평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手段으로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²⁶⁾

과연 敎育이 효과적인 平等化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實證的 研究 뒷받침없이 미리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敎育과 經濟的地位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연관관계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敎育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이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이 小節의 주요한 과제는 바로 이러한 實證的 知識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평등화를 가져 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敎育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할 때 또 한 가지

(24) 물론 이것은 그들이 그 정도의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연구의 방법론이 다른 데 기인한다.

(25) 그 단적인 예로 서울의 江南과 江北地域 사이의 大學進學率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예를 통하여 부유한 가정의 자식들이 다음 세대의 부유한 가정을 이를 확률이 높다는 짐작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6) 逆說의으로 敎育이란 것을 不平等構造의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Bowles and Gintis(1975)를 보라.

빠져서 안될 것은 과연 교육이란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所得에 영향을 주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대조적인 여러 視角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시각에 따라 政策的인 含意가 달라지게 된다. 즉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 평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틀려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小節에서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해볼까 한다.

1) 教育을 보는 네 가지의 상이한 視角

(1) 人的 資本의 理論

教育의 目的이 어디에 있는가는 궁극적으로 教育學者가 대답해야 할 성질의 문제이다. 經濟學者로서의 관심사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느냐에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육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生産性을 높여 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상식적인 생각을 이론적으로 定式化한 것이 바로 人的 資本의 理論이다.

슐츠(T.W. Schultz), 베커(G. Becker), 민서(J. Mincer) 등의 인적 자본의 이론가에 의하면 教育은 사람 그 자체에 대한 투자행위, 즉 人的 投資의 中心部分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教育은 勞動의 生産性을 제고시키며 이처럼 제고된 생산성에 대한 代價의 형태로 보다 높은 賃金이 지불되게 된다. 教育을 받기 위해 쓰여진 機會費用은 미래의 더 높은 임금으로 회수되며, 兩者의 比교를 통해 教育에 대한 收益率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적 자본의 이론에서 보는 教育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物的 投資行爲, 예컨대 機械를 사는 행위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때 教育水準의 차이에 따른 賃金隔差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불가피하며 어떤 의미로는 바람직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에 대한 높은 임금이 더 높은 生産性에 대한 報酬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바로 이 原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고 해서 教育機會의 平等化를 통한 임금격차의 해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人的 資本의 이론가 중에서도 平等化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의 평등화가 상당히 消極的인 의미에서의 평등화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²⁷⁾

(27) 예컨대 極貧家庭 아동에 대한 優待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을 지지하는 인적 자본의 이론가는 찾아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2) 選別道具로서의 教育

에로우(K. Arrow)나 스티글리츠(J. Stiglitz)가 보는 教育의 역할은 앞에서의 人的 資本의 理論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教育이 과연 生産性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教育의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만 곳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개별 노동자의 能力에 대한 直接的인 情報가 결여된 상태에서 教育은 間接的인 信號를 보내 주는 역할을 하는데, 教育의 사회적인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教育의 중요한 의미는 능력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려내는 選別道具(screening device)라는 데 있다는 말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教育이라는 것은 生産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分配的인 效果만 만들어내게 된다. 스티글리츠(1975)의 模型에서 教育의 總社會的 收益率(gross social rate of return)은 零이며, 教育이라는 선별과정에 드는 費用을 차감한 純社會的 收益率(net social rate of return)은 陰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教育의 私的 收益率(private rate of return)은 陽이 된다는 것이다.

選別道具로서의 教育은 이처럼 이득을 받는 사람의 生産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의 임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 반면에 教育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教育은 所得의 隔差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教育은 平等化보다 오히려 不平等化를 가져다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職務競爭의 理論

서로우(L. Thurow, 1975)는 職務競爭(job competition)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형 내에서의 教育의 의미는 앞에서 본 두 대조적인 學風 사이의 折衷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직무경쟁의 모형이 가지는 특징은,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일을 찾아다닌다고 보는 데 비해 이 모형에서는 일이 사람을 찾는다고 보는 데 있다. 직무경쟁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은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소망스러운 수준의 生産性을 갖춘 노동자로 訓練하는 일이 된다. 실제에 있어 유용한 機能은 노동자가 일단 어떤 직장을 잡고 經驗을 쌓는 과정에서 現場訓練(on-the-job training)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 이 모형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教育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教育은 生産性 그 자체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訓練可能性(trainability)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勞動市場에 갓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 적절하게 골라 뽑는 기준은 가장 낮

은 訓練費用만으로도 소망스러운 수준의 생산성을 갖추리라고 기대되는 순서가 된다. 이때 教育水準, 年齡, 性別같은 배경자료들이 참고되어 훈련비용에 대한 예측이 행해진다. 이들 배경자료 중에서 교육수준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의 하나가 되며, 따라서 교육수준 分布에 있어서의 변화는 勤勞所得 分配의 양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教育이 生産性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 있어 이 이론은 바로 앞에서 본 選別道具로서의 教育觀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다 쉽게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 역시 하나의 信號傳達機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쉽게 훈련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갖춰 준다는 점에서 단순히 신호만을 전달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서로우는 이 이론에 입각하여, 所得分配의 平等化를 위하여 教育을 핵심적인 공공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교육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행해지더라도 현존하는 賃金隔差가 축소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이 생산성을 직접 높이는 역할을 한다면 대규모의 교육투자는 생산성의 전반적인 上向平等化를 가져 와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겠지만, 職務競爭이란 시각에서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로우는 만약 사회가 보다 平等한 所得分配을 원한다면 그것은 賃金隔差에 대한 正面攻撃을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4) 急進派의 見解

이상에서 설명된 세 가지의 견해와 매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急進派의 見解(radical view)이다. 보울즈-긴티스(S. Bowles and H. Gintis, 1975)에 의해 잘 대변되고 있는 이 견해에 의하면,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教育의 기본적 역할은 資本主義的 秩序를 재생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을 많이 받거나 뛰어난 성적을 올린 사람을 좋은 職場에 배정한다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成果에 입각한 배정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사회의 不平等을 合理化시킬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교육이 勞動者들을 分裂시키고 階級意識을 弱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진파적 견해에 의하면, 더 많은 教育을 받은 사람들이 더 높은 賃金を 받게 되는 이유가 단순히 더 높은 生産性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階級에 기초를 둔 權力構造를 受容하는 태도를 배양하거나 또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는 역할을 해 줌으로써 雇用主는 교육을 더 많이 받은 勞動者로부터 더 쉽게 노동을 빼낼 수 있는 것도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

을 통해 이들을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分裂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보다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資本家の 權威에 도전할 수 있는 집단적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急進派的 見解에 의하면, 敎育은 平等化를 가져 오는 매개체가 아니라 不平等을 固着化시키고 正當化시키는 수단이 된다. 사람들의 敎育水準을 平等化시키는 것이 經濟的地位의 不平等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敎育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不平等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사회의 총체적인 變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을 통해 間接적으로 平等化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앞의 세 가지 입장과는 매우 판이한 敎育觀에 접하게 되는 것이다.

2) 平等化를 위한 手段으로서의 敎育

이상에서 개관해 본 여러 가지의 敎育觀 중에서 네번째의 것, 즉 敎育은 기본적으로 現體制下의 不平等性을 正當化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에 일리가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學界 全體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계의 의견은 대체로 敎育이 平等化를 위한 政策道具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다만 그 效果의 정도에 대해서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敎育이 平等化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떤 사람의 所得이나 職業的地位가 그 사람의 敎育水準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우리의 피상적인 인상으로부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각기 다른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더 많은 敎育을 받은 사람이 더 높은 賃金を 받게 된다는 경향 그 자체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집중적인 敎育投資를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더 많은 敎育을 받게 한다면 그들의 경제적 지위가 向上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즉 敎育은 경제적 지위의 平等化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 특히 열등한 경제적 지위의 世襲을 막는 수단으로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을 가져 오게 되는 원인을 敎育의 단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認知的·非認知的 能力 및 個人的 特性의 차이라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고, 다시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면 遺傳的 素因과 敎育的 環境의 차이가 불평등의 본원적 원인이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敎育을 수단으로 해서만 平等化의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의 不平等化 要因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불평등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教育機會를 平等化시키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데 있다. 교육은 學校라는 可視的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知能指數를 平準化하는 것 같은 막연한 목표보다 훨씬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家族背景의 차이를 없애고 모두가 평준화된 가족배경을 갖도록 만드는 일은 더욱 더 어려울 것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教育을 평등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戰略的으로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

한편 사람에 따라서는 教育機會를 평준화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所得 그 자체를 균등화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쓸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켈크스 등(1972)은 실제로 평등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이란 것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을 균등화시킨다는 것을 말하기는 쉬울지 모르나 실제에서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계층의 강력한 반발로 말미암아 실현되기가 거의 불가능함이 분명하다. 결국 教育機會의 平等化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유효하고 실현성있는 平等化의 戰略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教育의 平等化의 手段으로서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가(다른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소득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전부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遺傳的 要因이나 環境的 要因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認知的 能力에 教育水準의 높고 낮음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얻고 있는 프리미엄이 사실은 인지적 능력에 대한 프리미엄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認知的 能力이나 그 밖의 여건은 불리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높은 교육만 받으면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야만 교육이 平等化의 手段으로서 有效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체로 悲觀的인 평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예컨대 켈크스 등(1972)이나 보울즈(1972) 같은 사람들은 所得에 대한 教育의 獨立的 效果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수준에 대해 어떤 收益率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사실은 그 대부분이 家族背景에 의한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베르만-타우만(1976)은 교육수준 격차의 3/4 가량을 遺傳이나 環境 같은 가족배경의 차이로서 설명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²⁸⁾

(28) Behrman과 Taubman의 최근의 연구는 교육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을 한층 더 높은 것으로

결국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教育이 平等化를 가져 오는 手段으로서 그다지 有效하지 않다는 함의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의 추세는 美國社會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60年代에 들어 오면서 미국사회는 平等化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偉大한 社會(Great Society)」 등의 깃발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핵심적인 역할이 맡겨진 것이 바로 教育機會의 平等化로서 'Head Start', 'Upward Bound', 'Neighborhood Youth Corps' 등 수많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실천에 옮겨졌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 오면서도 不平等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연히 教育기회의 平等화가 가진 有效性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연구결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悲觀的인 분위기는 매우 광범하게 확산되어 갔다. 최근에 이르러 글레이저(N. Glazer, 1986)는 教育기회 平等화의 효과가 全無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조심스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날에 보던 教育기회의 平等화에 대한 熱氣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美國의 경험, 그리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분명히 示唆的인 것이기는 하되 우리 社會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사회에서 教育이 차지하는 位相은 사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教育制度가 운영되는 방식에 따라 家族背景과 教育水準의 상관관계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며, 이에 따라 教育기회 平等화의 효과도 달라질 것이다. 한 예만 든다면 12年間的 義務教育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비해 볼 때 단 6年間만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단지 의무교육의 年限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平等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의무교육의 기한을 늘리게 되면 가족배경의 차이가 교육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또한 아주 낮은 學歷을 가진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교육수준, 나아가 소득수준의 平等화를 가져오게 될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社會의 뿌리깊은 學閥選好傾向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에 대해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教育機會의 平等化를 통한 효과는 美國이나 여타의 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²⁹⁾ 이와 같은 분위기 아래서 學閥 그 자체가 平等화되면

보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1989년의 논문에서 학력수준 격차의 88%가 遺傳的 要因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9) 물론 우리 사회라고 해서 단지 학벌이 높다고 해서 生産性과 관계도 있는데 높은 인급을 주고

임금수준도 따라서 급속하게 평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높은 생산성 때문에 더 높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선호되는 것이라면 단지 학벌만의 평준화로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평준화가 있어야만 분배의 평등화가 가능할 것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추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實證的 資料가 마련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피상적인 관찰에 의존한다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教育이 중요한 身分上昇의 通路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이 教育制度에 대한 논의를 微視的인 教育學의 觀點 내에 국한시켜서 진행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巨視的인 觀點에서 分配上의 平等化 등과의 관련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3. 不平等 要因의 除去可能性

사람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不平等이 싹트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불평등성 전체가 우리에게 宿命으로 지워진 것은 아니다. 어떤 불평등의 요인은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 영향의 정도를 완화시키기 힘들기도 하겠지만 어떤 불평등의 요인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불평등성의 요인은 제거되는 것이 마땅한 반면 어떤 요인은 오히려 그대로 놓아 두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甘受해야 하는 불평등성의 정도는 현실에서 보는 불평등성의 정도보다 상당히 작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의 불평등성은 능히 회피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平等化로의 意志가 결여된 탓에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小節에서는 불평등의 여러 요인들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누어 봄으로써 불평등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해 보려고 한다.

1) 個人的인 次元의 不平等要因

앞에서 不平等의 最初의 싹은 家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것들은 遺傳的 要因, 教育的 環境 및 經濟的 環境으로 내뿜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유전적 요인의 경우를 고찰해 보면, 이것의 除去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대여 애를 써서까지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매우 非常識的이고 非民主的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업의 경영주가 合理的인 이상 어떤 이유가 있어서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고학력자가 얻고 있는 프래미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생산성의 격차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모른다. 어쨌든간에 이러한 성질의 차이를 제거하는 데 드는 社會的 費用이 그것에서 오는 便益을 초과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先天的인 핸디캡을 안고 있는 사람이 經濟的 계급의 敗者가 되어 비참한 생활로 전락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사회의 本流에 몇몇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유전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극도로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不可避한 부분으로서 甘受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經濟的 環境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의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선뜻 인정하기가 힘들다. 부유한 가정에서 보다 나은 營養이나 보다 비싼 教育을 제공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贈與稅나 相續稅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자가 되는 현상은 막아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의 一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理想이 현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合法·非合法的인 脫稅行爲 때문에 그 實效를 거의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다음으로 教育的 環境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의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의 경우처럼 그것의 除去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과 경제적 환경의 경우처럼 제거가 가능한 상황의 중간 정도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家庭에서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부모는 知的인 刺戟을 충분히 주어 能力의 啓發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도 하겠지만 어떤 부모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유전적 요인을 평준화시키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교육적 환경을 평준화시키기도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 환경의 격차에서 생기는 불평등성의 경우에는 적절한 社會的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는 貧困家庭의 자녀들을 위한 託兒所에서의 教育프로그램, 혹은 일반적인 早期教育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의 교육적 환경이 서로 다른 데서 나오는 효과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앞 節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유전적 요인과 교육적 환경은 認知的·非認知的 能力과 個人的 特性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에서 발견하게 되는 個人間 能力의 隔差가 사실은 유전적 요인과 교육적 환경의 차이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의 平準化가 힘든 것이라면 能力的 平準化도 따라서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능력의 平均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회의 예를 현실에서 찾아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能力的 차이를 그대로 經濟的 地位의 차이로 이어지게끔 내버려 두어야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公平한 分配의 基準이 能力에 있는 것이 아니라 努力이나 必要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은 능력 그 자체가 平均화될 수는 없어도 능력과 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실제로는 능력이라는 하나의 不平等의 要因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능력의 격차가 分配상의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사회질서를 마련해 놓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한다.⁽³⁰⁾ 모든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는 不平等性이 어떤 肯定的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예컨대 적절한 정도의 不平等性이 존재할 때 보다 生氣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能力的 차이를 반영하는 불평등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유인을 준다는 의미에서 사회의 생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클 것이다.

다만 능력이라는 것이 개인의 自發的 意志보다는 유전적 요인이나 교육적 환경같은,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여건에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경제적 지위의 격차에 무조건적인 正當性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약간의 능력 차이가 과도한 경제적 지위의 격차로 이어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매우 어려운 생활밖에 할 수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제외한다면 能力的 차이에 의한 불평등은 대체로 受容可能한 성질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個人的인 次元에서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의 요인으로서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教育이다. 그것이 能力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교육 그 자체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인지의 엄밀한 구분은 힘들다 하더라도, 教育水準의 격차가 經濟的 地位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것이 불평등화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거의 똑같은 교육수준을 이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일은 엄청난 社會的 浪費를 가져오게 됨이 분명하다. 따라서 보다 현명한 태도는

(30) 筆者도 그 중의 하나임을 밝혀 둔다.

교육수준 그 자체를 평준화하려 하기보다 교육수준의 차이가 너무 큰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平等化 效果를 기대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처럼 高 學歷者에게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매우 큰 평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와 같은 프리미엄이 더 높은 生産性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주장은 理想的인 市場狀況을 전제로 할 때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 경제같이 여러 가지의 不完全性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큰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

2) 社會的인 次元의 不平等 要因

이상에서 살펴 본 個人的 次元의 불평등 요인의 경우에는 家庭이라는 社會政策의 영향이 미치지 어려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除去가 어렵다는 쪽으로 평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지금 고찰하게 될 社會的 次元에서의 불평등 요인은 경우가 다르다. 즉 이것들은 대부분이 적절한 사회정책을 통해 충분히 제거될 수 있는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앞 節의 1)項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體制內的인 不平等化 要因 중 처음 두 가지, 즉 財政制度와 經濟政策의 基調의 경우에는 政府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 불평등의 요인이 생긴 것이므로 원하기만 한다면 즉시 제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不平等의 深化라는 代價를 무릅쓰고 어떤 目標—예컨대 成長의 極大化—를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재정제도나 경제정책의 기초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쉽사리 제거될 수 있으면서도 현실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勞動市場의 狀況이나 價格의 變動에 의한 불평등의 경우에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앞의 경우보다 제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적절한 政策的 對應을 통해 이들 요인에 의한 不平等의 深化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종래의 分配理論에서는 이 점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 점과 관련하여 政府가 중요한 役割을 수행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기존의 분배이론이 주로 個人的인 次元에서의 불평등 요인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데 있다.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가격변동이 分配狀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이러한 인식이 分配理論에 본격적으로 흡수,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體制內的 要因의 마지막 범주, 즉 差別이나 不正・腐敗같은 불평등 요인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당연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이것들은 다른 불평등 요인과는 달리 일말의 不可避性이나 正當性을 찾아 볼 수 없는, 의당 제거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平等化로의 작업은 이들을 제거하는 데서 그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끝으로 體制 그 자체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選擇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평등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지향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체제를 선택하는 문제는 資源配分의 效率性이란 측면도 크게 강조되고 있는 만큼 말처럼 손쉽게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어느 체제가 보다 公平한 分配를 약속해줄지 모르는 형편이다. 결국 體制와 관련된 불평등 요인의 제거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3) 綜合的 評價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不平等化의 요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遺傳的 要因이다.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차이를 평준화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제거가 쉽지 않은 불평등 요인이 가정의 教育的 環境이다. 이에 의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는 社會政策의 효과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까지 미쳐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교육적 환경의 차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를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유전적 요인이나 교육적 환경의 차이를 제거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能力이라는 또 하나의 불평등 요인도 비슷하게 제거하기 힘든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教育水準 그 자체도 완전히 平準化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能力이나 教育水準에 있어서의 차이가 너무 큰 經濟的 地位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社會政策의 활용은 가능할 것이다.

이상이 완전한 除去가 힘들거나 혹은 제거하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불평등의 요인이라면, 쉽사리 除去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가정의 經濟的 環境 및 社會的 次元에서의 모든 불평등 요인이다. 여기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平等化를 위한 노력을 할 용의만 있다면 技術的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회에서나 이와 같은 유형의 불평등 요인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平等化로의 社會的 意志가 박약한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不平等性 중 얼마나 큰 부분이 각각의 불평등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는 결국 實證인 문제이며 사회마다 다른 답이 나올 것이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우리는 이에 대한 이렇다 할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社會에 대한 답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그런데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불평등성 중에서 능히 除去될 수 있는 불평등 요인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구성원의 불평등성에 대한 容認度가 낮은 경향이 있다. 그만큼 不平等한 分配의 不可避性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경향을 이용하면 한 사회 안의 불평등 요인의 구성에 대한 대략의 아이디어를 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본다면, 불평등성에 대한 국민들의 容認度가 무척 낮음을 관찰할 수 있고, 이에 미루어 보아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성격의 불평등 요인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筆者(1989, 제 7 장)가 이미 다른 곳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우리 사회에 불평등성을 가져오게 한 요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政經癒着 혹은 權力型 不正이다. 이 요인이야 말로 아무런 不可避性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것에 의해 야기된 불평등성의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극도의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成長一邊倒의 開發戰略이 가져온 불평등화 효과에 대해서도 정도는 좀 더 약하지만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엄격한 相續稅制度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莫大한 富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유로이 옮겨지는 것 역시 국민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 不動產價格의 暴騰으로 말미암아 이를 소유하는 富裕層은 앉아서 富를 늘리는 반면 다수의 無住宅者는 生存의 基盤마저 위협받게 되는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것들이 능히 除去될 수 있는 불평등 요인이면서도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不滿이 危險水位에 까지 올라가 있는 사실은 단지 같은 銅錢의 兩面일 뿐이다.

IV. 맺 음 말

지금까지 經濟的 地位의 不平等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회미한 끝맺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分配理論의 現住所라고 할 수 있으며, 筆者의 限界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작업을 통해서 몇 가지의 조그만 示唆를 얻을 수 있었다면 그것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점들일 것이다. 우선 첫째로 한 社會의 不平等性은 單一한 要因에 의해서 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생겨난다는 점이다. 그렇다

면 현존하는 분배의 상태를 한 가지의 주요한 因子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는 별로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예를 들어 能力的 理論이라든가 偶然性的 理論, 혹은 財産相續의 理論 등이 현존하는 분배상태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不平等性은 家庭의 울타리 안에서 싹트기도 하지만 社會的인 與件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고 있다는 인식을 들 수 있다. 기존의 分配理論은 個人的인 次元에서 존재하는 不平等要因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나머지 社會的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불평등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등한히 하였다. 물론 모든 經濟現象이 分配的인 含意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따라서 社會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 요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분배이론에 본격적으로 吸收, 統合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분배이론의 앞에 놓여진 課題는 社會적 차원의 불평등 요인까지 포괄하는 分配模型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배이론의 수준에서 個人的인 차원의 불평등 요인이나마 모두 포괄하고 있는 모형조차 드문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이 요원한 과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는 하다.

셋째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분배상태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은 아니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意識的인 努力 여하에 따라서 분배의 상태가 현저하게 평등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현재보다 더 불평등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人間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不平等性이 싹튼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절한 社會政策을 통한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自然狀態에서의 不平等化 傾向과 더불어 人爲的으로 창출된 불평등화 요인도 이에 못지않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창출된 불평등성의 부분만큼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不平等性에 대한 이상에서의 인식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不平等의 問題가 단지 個人만의 문제가 아니며 社會의 문제이기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資本主義體制下에서 모든 經濟主體들이 자유로운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불평등성까지 個人的 責任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큰 설득력이 없다. 이 논문에서의 논의를 통해 분명해졌듯이 個人的 自發的이고 獨自的인 選擇에 의해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폭은 무척 좁다. 어느 家庭에서 어떤 遺傳的 要因과 環境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이미 장래의 경제적 지위를 상당한 정도로 결정지워 줄 뿐더러, 여러 가지의

社會的 與件에 대해 개인은 受動的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전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는 요구가 과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不平等性의 문제가 社會的인 것이기도 하다면 政府는 당연히 平等化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平等化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인 社會福祉프로그램을 施惠的인 次元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올바르지 못하다. 시혜적인 차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못사는 데 대해서 당연히 個人이 責任을 져야 할 것이지만 보기에 안되었기 때문에 도와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성이 社會的인 문제이기도 한 한에 있어서 이 생각은 정당화될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社會의 上層部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成功은 순전히 개인적인 美德의 결과라는 믿음 아래서 平等化를 위한 改革에 敵對的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결코 그의 美德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富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한 것도 社會的인 約束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개인적인 미덕을 그다지 강조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순전히 자신의 企業家的 精神의 덕으로 많은 富를 쌓을 수 있었다고 믿는 사람의 경우에도 社會, 즉 政府의 有形·無形의 도움 없이는 그것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安定된 社會秩序 하에서 그와 같은 축적이 가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富가 社會性을 갖게 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不平等 要因에 대한 보다 나은 理解는 平等化를 위한 작업이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論文은 단지 不平等性이 社會的인 問題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平等化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해 줄 수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 요인에 대한 不完全한 이해에 그치고 말아 그와 같은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끝맺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의 限界는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른 研究者들에 의한 노력을 통해 認識의 地平이 비약적으로 넓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金善雄, 「所得 및 富의 公正分配에 대한 社會的 認識의 性向」, 所得 및 富의 公正分配를 위한 政策協議會 發表論文, 1989.

- 孫在英, 「土地問題의 經濟的 解析과 政策代案의 檢討」, 國土開發研究院 政策研究資料 90-01, 1990.
- 李俊求, 『所得分配의 理論과 現實』, 茶山出版社, 1989.
- _____, 「高度成長期의 日本財政」, 『經濟論集』, 제28권 제2호, 1989.
- Atkinson, A.,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the Individual Life-Cycle," *Oxford Economic Papers*, No. 23, 1971.
- _____, *The Economics of Inequ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_____, (ed.), *Wealth, Income and Inequality*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Barlow, R. et al., *Economic Behavior of the Affluent*, Washington, D.C.: Brookings, 1966.
- Behrman, J., and Taubman, P.,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come and Weal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6, 1976:436-40.
- _____, "Is Schooling 'Mostly in the Genes?' Nature-Nurture Decomposition Using Data on Relativ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7, 1989:1425-46.
- Blank, R., and Blinder, A., "Macroeconomics,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 Danziger and D. Weinberg(eds.), *Fighting Pover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Blau, P., and Duncan, O.,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1967.
- Blinder, A., "A Model of Inherited Weal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7, 1973:608-26.
- _____, *Hard Heads, Soft Hearts*, Reading: Addison Wesley, 1987.
- Blinder, A., and Esaki, H., "Macroeconomic A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the Postwar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0, 1978:604-9.
- Blum, W., and Kalven, H., *The Uneasy Case for Progressive Taxa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3.
- Bowles, S., "Schooling and Inequali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0, 1972:219-51.
- Bowles, S., and Gintis, H., "The Problem with Human Capital Theory: A Marxian Critiqu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1975:74-82.
- Bowles, S., and Nelson, V., "The 'Inheritance of IQ' and the Intergenerational Reproduc-

- tion of Economic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6, 1974: 39-51.
- Brittain, J., *The Inheritance of Economic Status*, Washington, D.C.: Brookings, 1977.
- _____, *Inheritance and the Inequality of Material Wealth*, Washington, D.C.: Brookings, 1978.
- Carter, C., "The Genetic Basis of Inequality," in A. Atkinson (ed.), *The Personal Distribution of Incomes*, London: Allen and Unwin, 1976.
- Corcoran, M. et al.,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Earn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6, 1976:430-5.
- Danziger S., and Weinberg, D., *Fighting Pover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Davies, J., and Shorrocks, A., "Assessing the Quantitative Importance of Inheritance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Oxford Economic Papers*, No. 30, 1978.
- Davis, H., and Scase, R., *Western Capitalism and State Capitalism*, Oxford: Basil Blackwell, 1985.
- Glazer, 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Poverty," in S. Danziger and D. Weinberg (eds.), *Fighting Pover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Goldberger, A., "Heritability," *Economica*, Vol. 46, 1979:324-47.
- Griliches, Z., "Wages of Very Young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4, 1976:69-86.
- _____, "Estimating the Returns to Schooling: Some Econometric Problems," *Econometrica*, Vol. 45, 1977:1-22.
- Harbury, C., "Inheritance and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Wealth in Great Britain," *Economic Journal*, Vol. 72, 1962:845-68.
- Harbury, C., and Hitchens, D., "The Inheritance of Top Wealth Leavers: Some Further Evidence," *Economic Journal*, Vol. 86, 1976:321-6.
- Harbury, C., and McMahon, P., "Inherit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op Wealth Leavers in Great Britain," *Economic Journal*, Vol. 83, 1973:810-33.
- Herrnstein, R., "I.Q.," *Atlantic Monthly*, No. 228, 1971:43-64.
- Hurd, M., and Mundaca, B., "The Importance of Gifts and Inheritances among the

- Affluent,” in R. Lipsey and H. Tice (eds.), *The Measurement of Saving, Investment, and Weal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Jencks, C., *et al.*, *In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 Jensen, A., “How Much Can We Boost I.Q. and Scholastic Achievement?”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39, 1969:1-123.
- Juster, F., (ed.),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Well-Being*, Cambridge Mass.: Ballinger, 1977.
- Kotlikoff, L., and Summers, L.,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 1981:706-32.
- Levine, D., and Bane, M., *The Inequality Controversy: Schooling and Distributive Justice*, New York: Basic Books, 1975.
- Menchik, P., “The Importance of Material Inheritance: The Financial Link between Generations,” in J. Smith (ed.), *Modeling the Distribu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eal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Metcalf, C., “The Size Distribution of Personal Income during the Business Cycl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1969:657-68.
- Mirer, T.,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the 1970 Recess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5, 1973a:214-24.
- _____,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1, 1973b:385-405.
- Musgrave, R.,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McGraw-Hill, 1959.
- Nolan, B., *Income Distribution and the Macro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Okun, A.,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C.: Brookings, 1975.
- Osberg, L., *Economic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Armonk: Sharpe, 1984.
- Oulton, N., “Inheritance and the Distribution of Wealth,” *Oxford Economic Papers*, No. 28, 1976:86-101.
- Projector, D., and Weiss, G., *Survey of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Technical Papers. Washington, D.C.: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1966.

- Rao, D. *et al.*, "Resolution of Cultural and Biological Inheritance by Path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Vol. 28, 1976:228-42.
- Royal Commission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Report No. 7*,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79.
- _____,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Ten Countries* (by A. Harrison), Background Paper to Report No. 7,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79.
- Rubinstein, W., "Men of Property: Some Aspects of Occupation, Inheritance and Power among Top British Wealth-Holders," in P. Stanworth and A. Giddens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 Smith, J., (ed.), *Modeling the Distribu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eal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Stiglitz, J.,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1975:283-300.
- Taubman, P., "The Determinants of Earnings: Genetics, Family and Other Environments: A Study of White Male Twi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6, 1976:858-70.
- Thurow, L., "Education and Economic Equality," in D. Levine and M. Bane (eds.), *The Inequality Controversy: Schooling and Distributive Justice*, New York: Basic Books, 1975.
- Wedgwood, J., *The Economics of Inheritance*, London: Routledge, 1929.